

2025년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사업(기술고도화)』 수혜기관 모집 재공고(3차)

경상북도, 포항시,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바이오프린팅 및 인공장기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업(기술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 바이오프린팅 및 인공장기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
- 바이오프린팅 및 첨단바이오 기술 보유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상용화 기술개발 고도화
-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상용화 지원센터*』 활용도 증대 및 활성화

* 포항지식산업센터 내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GMP 생산실, QC, Wet-lab 등 구축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대상	비고
기술고도화 지원	국내 바이오프린팅 및 인공장기 전후방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또는 예비 창업자	-

※ 향후,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상용화 지원센터 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 별도 추진 예정

※ 산학연병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약5개월)
- 지원 범위 및 내용

분야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수	사업비
기술 고도화 지원	○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전·후방 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 세포배양, 바이오잉크 개발, 바이오프린팅 기술 및 지지체 개발 등 바이오프린팅 관련 소부장 기술개발 - 개발제품(오가노이드, 인공장기 등)의 유효능 및 성능평가기술 - 바이오소재 유효능 및 독성평가 응용기술 등 (실험동물 대체시험평가 기술개발)	1개소	최대 75백만원 ※ 민간부담금 별도(총사업비 의 25%)

※ 지원 규모(사업비/지원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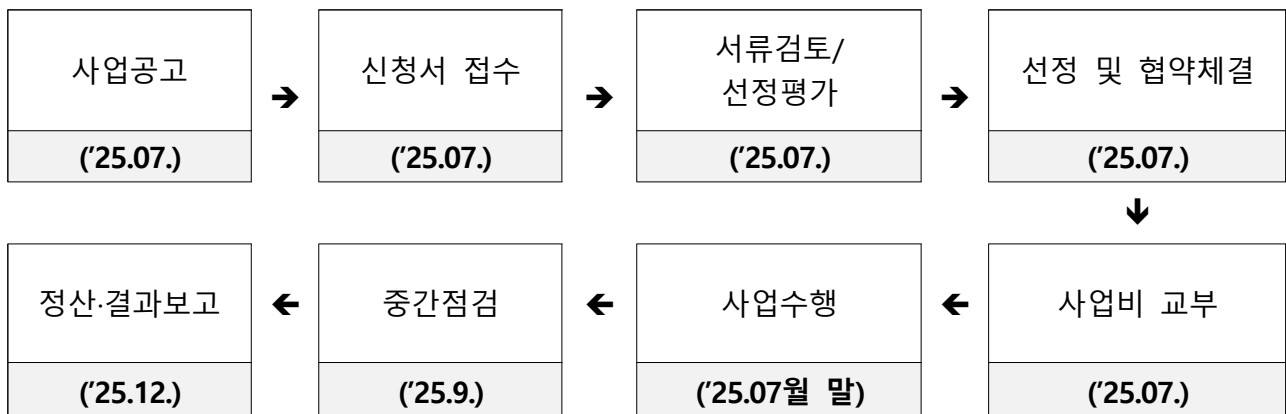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지방보조금+민간부담금)의 25% 이상 민간부담(부가세 별도)

- 지원방식 : 직접지원(사업 전용계좌로 지급)

- 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입금 필수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으로 구성,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물로 책정 가능

□ 사업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2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07.09. 16시까지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처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310호(포항시 북구 융합기술로 66-2)
 - ※ 우편 접수는, 우편 소인일이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 원본 및 사본 제출, 원본은 전체 스캔후(PDF) 이메일 발송
 - 원본(1부) : 필수 제출서류 및 선택 서류, 별첨 등 서류 전체 제본
 - 사본(7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본
- 문의 처 :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최수정 주임연구원(☎054-262-4213 / E-mail : sjchoi94@ptp.or.kr)

□ 제출 서류

- 신청자가 기업일 경우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7부)	[양식 1]
	2.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양식 3]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 4]
	4. 신청기관 자가진단표	[양식 5]
	5.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비창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대체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7. 기업재무제표(최근3개년) ※ 2024년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예비창업자의 경우, 생략 가능
	8.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최근3개년)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최근3개년)	
	10. 사실증명원(총사업자 등록내역)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폐업사실증명원)	

	11.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해당 시 제출
선택	12. 가점 관련 증빙자료 ※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점사항' 참고	해당 시 제출
	13.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자료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특허 수상, 수출실적 증빙서류 등	해당 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가 비영리기관일 경우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7부)	[양식 2]
	2.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양식 3]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 4]
	4. 신청기관 자가진단표	[양식 5]
	5.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선택	7.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자료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특허 수상 등	해당 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 신청제한

- 기업이 부도, 자본전액 잠식, 휴·폐업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 접수 마감일까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동일 과제를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관,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및 포항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재)포항테크노파크 규정」
 -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가점 사항

-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균점수에 최대 5점 부여

항목	가점 조건	증빙 서류	가점	비고
투자 유치	'22 ~'24년 5억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	투자계약서 (주식인수계약서)	1	-
민간 부담	총사업비 기준 50% 이상 민간부담 시	사업계획서	2	-
소재지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포항에 본사 및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입주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등	2	-

4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개요

- (서류검토) 제출서류 바탕으로 신청자격 검토(서류 누락, 제외 등 적합성)
 - ※ 필수서류 누락 등 부적합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 발표평가)

단계	내용	일자(예정)	평가자
1단계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7월	외부전문가 5인
2단계	발표평가	7월	외부전문가 5인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평가위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비중은 서류평가 30%, 발표평가 70%의 비중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적격기업을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함
- 발표평가는 기업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의 구두 발표로 진행 (발표 10분, 질의 10분)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공지 예정(PPT형식, 원본파일 1부/사본 7부 제출)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
- 동점 발생 시, 발표평가 성적 우수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평가항목(사업계획→ 기술성 및 사업성 → 성장가능성 → 수행역량)의 순으로 선정함
- 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 (점수산정)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
- (선정기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관 모집공고 시행 및 사업홍보 • 수혜기관 지원신청서 접수 	포항TP	7월
↓			
수혜기관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기반, 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요건심사)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비대면) 및 발표평가(대면) -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종합평가 • 수혜기관 선정 및 TP지원금 확정 	포항TP (평가위원회)	7월 중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평가결과에 따른 선정기관 대상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포항TP ↔ 수혜기관	7월 중
↓			
지원과제 수행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관 : 수행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 포항TP : 수혜기관 모니터링 및 점검 	수혜기관	7~11월
↓			
지원 과제 결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관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수행 결과보고(발표평가) 	포항TP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불인정액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기준

○ 서류평가 기준(30% 반영)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계획 (40)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성	15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15
	- 예산계획의 합리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절 및 타당성	10
정책 부합성 (20)	- 정책 적합성	- 지원사업 추진 목적과의 적합성	10
	- 산업 기여도	- 해당분야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적·사회경제적 효과	10
성장 가능성 (40)	- 성장 가능성	- (기업) 매출, 투자, 신규고용 등을 반영한 성장 가능성 - (비영리기관) 지식재산권 출원 가능성(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20
	- 제품·기술의 가능성	- (기업) 연구개발 성과, 기술 고도화 또는 개발 제품의 수출화 등 성장 가능성 - (비영리기관) 개발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20
합 계			100

○ 발표평가 기준(70% 반영)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수행역량 (10)	- 보유역량	- 관련분야 기술 및 전문인력 보유 등 - 기술 또는 제품 개발 차별성, 독창성 등	10
사업계획 (30)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10
	- 목표 달성 가능성	-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10
	- 사업비 적절성	- 사업비 집행계획 및 편성 적절성	10
기술성 및 사업성 (40)	- 기술의 우수성	- 목표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20
	-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제품의 차별성·상용화 가능성	20
성장 가능성 (20)	- 성장전략	- (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수출 등 성장 전략 - (비영리기관)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 상용화 등 성장 전략	10
	- 산업 기여도	-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적·사회경제적 효과	10
합 계			100

□ 선정 및 협약 체결

-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며, 종합평점 산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 기관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통지) 사업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및 연락처로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
-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별도 공지
 - ※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지방보조금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기업 별도 부담)
 - ※ 선정기관이 예비창업자일 경우, 협약 체결전까지 법인 설립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5 수혜기관 의무

- 선정기관은 협약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관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부분을 입금하고, 사업비 교부시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자부담 부분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선정기관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관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관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 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 신청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을 받게 됩니다.
- ②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 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기관이 공고문,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 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중복지원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

- 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관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관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관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 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 보증보험증권 보증 기호는 '협약지원금',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종료 + 3개월
-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사업비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사업비 교부 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일 이후 사업비 '사전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 및 승인 후 집행해야 함
- 사업비 통장은 기관명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함. 또한,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함
- 사업비 예산 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변경 시, 비목 간 변경은 '승인성', 비목 내 세목 변경은 '통보성' 으로 진행하며, 승인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포항테크노파크의 승인 이후에 집행 가능함
 -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변경은 승인성, 통보성 모두 공문으로 증빙하여야 함
 - ※ 사업 참여인력,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도 동일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 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함